

제도적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노동부보건기좌 이 경 남

1. 일반건강진단체도의 개요

가. 1962 - 1982

- 근로기준법 제 71 조 (1953.5.10)
 -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 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사용자는 건강진단결과에 의하여 근로 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근로보건관리규정 제 10 조-제 14 조 (1961.9.11)
 - 실시회수
 - 유해위험부서 근로자 : 년 2 회
(4,9 월)
 - 일반근로자 : 년 1 회
 - 검사항목
 -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신 경계의 임상의학적 검진 또는 검사
 - 신장, 체중, 시력, 색맹 및 청력의 검사

- 투베르쿨린피내반응검사, 엑스선 검 사, 적혈구 침강속도 검사 및 객담 검사
- 실시자 : 보건관리자 (제 7 조)
- 결과보고
 - 사업주는 결과표를 작성, 관할 지방 관서경유 노동청에 보고

나. 1983 - 1986

- 산업안전보건법 (1981.12.31)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 시간 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 - 48 조 (1982.10.29)
 - 건강진단의 분류
 - 채용시 특수, 일반 및 임시 건강진단
 - 실시회수
 - 생산직 근로자 : 년 1 회
 - 사무직 근로자 : 2 년 1 회
 - 검사항목
 - 기왕력 및 작업경력
 -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 혈압, 전혈비중, 요중당 및 단백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엑스선
 - 실시기관
 - 보건관리자 또는 의료기관
 - 결과보고 및 서류보존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1 월이 내에 결과보고
 - 건강진단 서류는 3 년간 보존

2. 현황 및 문제점

가. 건강진단수진을 저조

○ 년도별 건강진단실시 상황

구 분 \ 년 도 별		'82	'83	'84	'85	'86
사업장	대상	31,059	33,040	34,220	39,593	53,483
	실시	26,463	31,108	32,247	35,415	45,149
	비율 (%)	85.2	94.2	94.2	89.4	84.4
근로자	대상	2,192,511	2,486,482	2,533,352	2,704,205	3,083,539
	실시	2,007,091	2,375,089	2,446,777	2,538,081	2,817,498
	비율 (%)	91.5	95.7	96.5	93.9	(91.4)
질병자수	계	83,400 (4.16)	95,268 (4.01)	92,447 (3.78)	115,081 (4.53)	-
	일반질병자	78,059 (3.89)	88,923 (3.74)	85,892 (3.51)	108,186 (4.26)	113,620 (4.03)
	직업병유소견자	5,341 (0.27)	6,345 (0.27)	6,557 (0.26)	6,895 (0.27)	-

() 총수진근로자에 대한 질병자 발견율임. (%)

○ 사업장 실시율 저조

- 영세소규모 사업장(5-10)의 상습적인 건강진단 기피
- 의료기관의 의도적 기피
- 근로감독 행정력의 부족으로 사전 사후지도 감독 미흡
- 86년도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검진대상 사업장이 년도중에 증가

○ 근로자 수진을 저조

- 질병근로자의 검진기피 현상 상존
- 검진수수료 절감을 위한 사업주의 고의적인 누락
- 원거리 이동검진을 하는 경우 검진당일 누락자에 대한 추가검진실시 곤란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실시로 당해년도 검진누락자 파악 곤란

나. 질병발견을 저조

○ 년도별 질병별 내역

질병별	연도별		'82		'83		'84		'85		'86	
	수진	발견	수진	구성비 (%)	수진	구성비 (%)	수진	구성비 (%)	수진	구성비 (%)	수진	구성비 (%)
수진 근로자수	2,007,097		2,375,089		2,446,777		2,538,079		2,817,498			
일반질병자	78,059	100	88,923	100	85,892	100	108,186	100	113,620	100		
총 계	(3.89)		(3.74)		(3.51)		(4.26)		(4.03)			
호흡기결핵	15,948	20.4	16,466	18.5	16,648	19.4	21,739	20.1	23,527	21.7		
	(0.79)		(0.69)		(0.68)		(0.86)		(0.84)			

질병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82	구성비 (%)	'83	구성비 (%)	'84	구성비 (%)	'85	구성비 (%)	'86	구성비 (%)
알레르기내분비영양등	-		-		-		6,056 (0.24)	5.6	7,031 (0.25)	6.2
혈액조혈기	-		-		-		3,819 (0.15)	3.5	4,655 (0.17)	4.1
신경감각기	16,466 (0.82)	21.1	13,434 (0.57)	15.1	11,107 (0.45)	12.9	13,689 (0.54)	12.7	13,300 (0.47)	11.7
순환기	25,103 (1.25)	32.2	28,804 (1.21)	32.4	30,448 (1.24)	35.4	35,607 (1.40)	32.9	39,147 (1.39)	34.5
호흡기	15,948 (0.79)	20.4	7,030 (0.30)	7.9	6,224 (0.25)	7.2	4,630 (0.18)	4.3	4,716 (0.17)	4.2
소화기	-		-		-		2,633 (0.10)	2.4	2,471 (0.09)	2.2
성뇨기	-		-		-		3,774 (0.15)	3.5	3,727	3.3
피부질환	1,244 (0.06)	1.6	1,220 (0.05)	1.4	909 (0.04)	1.1				
기타	14,240 (0.71)	18.2	21,969 (0.92)	24.7	20,556 (0.84)	23.9	16,239 (0.64)	15.0	15,406 (0.55)	13.6

()는 총 수진근로자에 대한 질병자 발견율임.

- 질병자 발견율은 4%내외로 일본과 검진항목이 동일함에도 검진결과 질병자 발견율이 일본의 1/2에도 미치지 못함.

국별	년도					
	'81	'82	'83	'84	'85	'86
한국	-	3.80	3.74	3.51	4.26	4.03
일본	8.9	9.2	9.3	9.1	9.4	-

- 자료 : 일본 노동위생의 광장, 전산업 (공무원 포함)

- 의료기관의 형식적 검진사례 상존
 - 소화기계 질환등 문진, 시진, 촉진에 의한 질병자 발견을 저조.
 - 1차검사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하여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요주의등 모호한 판정
 - 의료기관별로 질병자 판정기준이 상이

하여 진단결과의 신뢰성을 잃고 혼란 초래

- 보건관리자 중심의 건강진단 실시제도 미정착
 - 검임 보건관리자의 형식적 선임으로 건강진단의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 미흡
 - 일부 보건관리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목적으로 선임수락후 직무 미이행

다. 질병자 사후관리 미흡

- 불확실한 진단 소견으로 질병근로자 불이익 처분 조장
 - 1차검진 결과만으로 근로금거나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
 -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등의 조치의견 남발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 지시에 불응 퇴직하는 사례 발생

라. 건강진단 질서문란 행위 자행

- 건강진단수가 미준수
 - 과당경쟁으로 덤핑행위 자행
- 원거리 검진으로 부실검진 자초
 - 시간에 제한을 받아 검진누락자에 대한 추가검진 미 실시
 - 각종 검사(노 및 혈액검사) 생략
- 사업주(노무담당자)와 결탁 허위영수증 발급, 질병자의 은폐등 부조리 사례 상존
 - 건강진단 개인표 기재를 사무장등 비의료인이 하는 사례 허다

-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
- 건강진단협의회를 구성, 자율정화 기능의 강화 및 건강진단방법의 개선등 자율적 개선 유도
- 건강진단수가의 노동부 장관 승인

3. 개선방안

가. '87 제도 개선 내용

- 실시대상업종의 확대
 -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업, 서어비스업 등 추가
-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형식적 검진배제
 - 빈혈검사 방법을 전혈비중법에서 헤마토크리트 또는 혈색소법으로 변경
 - 30세이상 근로자에게 간기능검사 실시
 - 1차건강진단검사 항목별 검사방법과 2차검진대상자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진단대상 질병의 범위를 정함
 - 질병자 사후관리 소견을 예상치료 기간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의 검진기피 및 연말집중 실시방지
 - 실시기간(3.1-10.31)의 엄수
 - 취업규칙에 실시시기 명시
 - 지방사무소별 대상확정 및 월별추진계획 수립 시행
- 원거리검진등 검진질서문란 행위 근절
 - 지방사무소 관내 소재의료기관 우선 지정

나. 향후 검토사항

- 건강진단 실시율 제고
 - 건강진단 미실시업체 의법조치 기준 강화
 - 건강진단의 조기실시 지도
 - 건강진단 보고사항의 간소화
-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형식적 검진방지
 - 건강진단결과의 전산화 추진
 - 지정지역내 검진의 엄격한 준수로 원거리 검진방지
 - 성인병 진단을 위한 건강진단 항목의 확대
- 부실검진방지
 - 건강진단 지정기관 협의회의 부실검진방지 기능 강화
 - 건강진단 수가 준수 철저지도
 -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결탁 적극 배제
 - 관외지역검진 적극 억제
 - 지정취소요건 강화
- 질병자 사후관리
 - 보건관계자의 건강진단 참여 기능확대
 -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질병자 확인 및 관리
 - 검진 의사 또는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조치의견 없이 질병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엄금
- 집단건강진단 방식의 탈피
 - 근로자가 연중 아무때나 지정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